

## 최초 법무부안과 최종 수정안의 비교표

내 용	최초안	최종수정안	비 고
특권성 및 자율성 강화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인권위원 임명제 청, 감사선임, 예결산 심의</li> <li>이사 중 4인은 관계부처 차관이 겸임, 7인은 법무장관 계청으로 대통령이 임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사회 폐지</li> </ul>
	직원신분 보장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원은 협의 선고, 징계처분 및 위원회규칙에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의사에 반하여 퇴직·휴직·강임·면직 당하지 아니함</li> </ul>
	인권위원 선임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사회가 위원 9인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회의장, 대법원장, 법무부장관이 위원 3인씩 추천, 대통령이 임명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</li> </ul>
	인권위원 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년, 1차 연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년, 1차 연임</li> </ul>
	예산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위 예산안을 법무부가 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무부에서 인권위 예산안 초정불가, 의견제시도 불허</li> </ul>
	기부금수령 신고조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장관에 신고</li> </ul>	삭제
	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위에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</li> </ul>	삭제
	정관변경 인가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관변경시 법무부장관의 인가 필요</li> </ul>	삭제
	공무원파 견요청서 경유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무원등 파견요청시 법무부장관 경유 필요</li> </ul>	삭제
	감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사회에서 선임</li> </ul>	삭제
	연례보고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통령에게만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통령과 국회에 제출</li> </ul>
	과태료 부과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위원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부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부과</li> </ul>

내 용	최초안	최종수정안	비 고
권 한 · 및 기능 강화	위원회의 조사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사기관등과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 위 조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사기관등이 아닌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추가</li> <li>불법 암수·수색 및 사람을 사망·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</li> </ul>
	차별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별, 인종, 종교, 출신지역등 74가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"정치적 전해" 추가</li> </ul>
	인권위의 업무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교육·홍보,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조사·구제 등 8개사항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권고와 연구,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관련 연구·자문, 인권상황 실태조사,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제정, 국제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5개사항 을 추가</li> </ul>
	업무방해에 대한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석요구 불응, 자료제출 거부 나 허위자료 제출등의 경우 파 태료 부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파태료 부과규정이외에 위원회 의 업무방해시 형법상의 공무 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하는 규정 신설</li> </ul>
	긴급구제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도규정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할 경우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권을 신설</li> </ul>
	법률구조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도규정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정 불성립시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</li> </ul>
	상임위원 및 소위원 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임위원 3명, 소위원회 2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임위원 4명, 소위원회 3개</li> </ul>
	자료제출 거부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시 "법 령에 의한 비밀", "사전관제인 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"등도 거부사유로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</li> </ul>